

문서번호	감사실-1825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6.03.31.
공개여부	공개

★과장	팀장	감사실장	상임감사	
협 조				

부패행위자 제재현황 공개 추진계획

2016.

부패행위자 제재현황 공개 추진계획

부패행위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상의 징계 외에 제재현황을 과감히 공개 (명예형·名譽刑)하여 일벌백계를 통한 직원비리의 근절 및 징계실효성을 제고

I 추진개요

□ 관련근거

- 공단임직원행동강령 제27조의 2 (2014.11.15)
 - 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 기준설정
- 2015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지표 의무사항 (2015.4.2.)
 - 내·외부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(배점 10점)
 - ※ 서울시 전투자기관 부패공직자 제재 현황 홈페이지 공개 시행

□ 추진경위

- '13년 이후 부패행위자 지속 발생(4명) ← '13년 2명/'14년 1명/'15년 1명

- ✓ 부패행위에 따른 경영평가 감점으로 재무적 손실 : 67억원
 - 경영평가 가등급 → 감점으로 다등급(성과급 280%→ 145%↓)
- ✓ 부패행위에 따른 권익위 청렴평가 감점으로 공단 청렴도 추락
 - '14년 2등급 → 감점으로 4등급, '15년 3등급→ 감점으로 4등급
- ✓ 부패행위에 따른 시의회 질책 및 언론 비판보도 등으로 신뢰도 훼손
 - 3년간 부패비위행위 의원 질의 및 자료요구 : 22건
 - 부패관련 부정적 언론보도 : 61건

- 반면,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인사규정상 일정기간 승진·승급제한에 그쳐 징계의 실효성 저하

⇒ 부패행위 고리 근절을 위하여 부패행위자에게 인사규정상의 징계 뿐만 아니라 징계 등 사실을 공개하여 공직생활의 낙인효과가 필요

II 개선추진방안

□ 공개대상 : 부패행위 등으로 당연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

- 부패행위 등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4호 참고
 - ⇒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입찰 및 인사비리, 성폭행 등 포함
 - ※ 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
- 당연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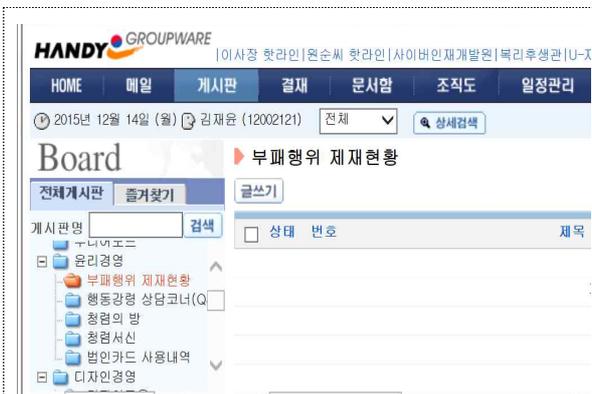
징계처분의 종류	공개 대상	비 고
부패행위 등	징계(견책)이상의 처분을 받은 직원	징계확정후 2주 이내 공개
일반비위 등	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직원	

[개선사항]

⇒ 부패행위 뿐만 아니라 입찰비리·성폭행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일반비위사항이라도 중징계사항은 과감히 공개

□ 공개내용 및 방법

- 내용 :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, 금품·향응 수수현황, 징계처분결과 등
 - ※ 게재양식 첨부 참조
- 방법 : 공단 그룹웨어 게시판 (내부) 및 홈페이지 게시판 (외부)



내부 게시판 (서울시설공단)



타기관 (부산광역시) 공개 현황

[개선사항] 게시시기 및 게시양식 등 구체화

Ⅲ

행정사항

2015 하반기 공개대상자 1명 공개

- 공단 그룹웨어 게시판 (내부) 및 홈페이지 게시판 (외부)
- 향후 공개대상자 확정시 2주이내 공개이행 (청렴담당자)

청렴관련교육시 부패사례 구체적 교육

- 신입사원 직무교육 및 부서별 청렴교육시 부패사례 특별교육 시행

[참고자료]

부패직원 제재현황 공개 관련 근거규정

[시행근거 : 공단임직원행동강령 제27조의2(부패공직자제재현황공개)]

- ①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현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(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), 금품·향응 수수현황, 징계처분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② 외부적발에 의한 제재현황은 기관홈페이지에 공개하며, 내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 자 처벌 현황은 기관 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. [신설2014.11.5]

공개양식 (예시)

연번	비위자 (적발시기)	비위내용	부패금액	징계종류	적발유형
1	○○○ (2013. 9월)	시공사로부터 민원 해결 목적으로 금품수수하여 현장에서 서울시 감찰반에 적발	100만원	정직 6월	외부
2	○○○ (2013. 11월)	기간제근로자 담당자가 브로커로부터 뇌물수수	1,950만원	파면	외부
4	○○○ (2014. 12월)	터미널 지하도상가 미화원으로부터 상가 미화원 채용대가로 상품권 수수	100만원	해임	자체
5	○○○ (2015. 8월)	시공업체로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배임수재 및 금품수수	2,450만원	파면	외부